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용현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업무를 대행함에도 휴직사유 등에 따라 업무대행을 임명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군인 업무대행 및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간호 목적의 휴직이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도 가능해 짐에 따라 간호휴직에 대한 용어 및 요건 개정임.

## 3.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 대상 및 수당지급 대상자 확대(안 제53조의 2)

1)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24.10.16.~11.27.)하여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군인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대상 및 수당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업무대행 대상은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해재난 출장 또는 파견만 가능했으나,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기소휴직, 불임난임휴직, 간호휴직, 동반휴직 등과 돌봄휴가 등 30일 이상 실시하는 휴가까지 확대함.

나. 간호휴직을 돌봄휴직으로 확대(안 제54조의5)

1) 「군인사법」 개정(‘24.12.03.)으로 간호를 위한 휴직 뿐만아니라, 돌

봄을 위한 휴직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휴직 명칭 및 요건을 개정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48조제3항제4호”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30일 이상 청원휴가를 가는 경우

제54조의5의 제목 “(간호휴직)”을 “(돌봄휴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호할 수 있는”을 “돌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간호하는”을 “돌보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간호할”을 “돌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간호하는”을 “돌보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간호할”을 “돌볼”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산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② (생략)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

2.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

제54조의5(간호휴직) 법 제48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  
-----  
-----  
-----.

<삭 제>

<삭 제>

제54조의5(돌봄휴직) -----  
-----  
-- 돌봄 -----  
-----  
-----  
-----  
-----.

1. -----  
----- 돌보는 -----  
--

가. (생략)

나. 본인 외에 조부모의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가. (생략)

나. 본인 외에 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돌볼 -----

2. -----  
----- 돌보는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돌볼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연 락 처	(02) 748 - 5128